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
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현주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현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2월 9일

발 의 자 : 임현주, 강수진, 이호진, 정병기,
오중균, 김육영, 이일준, 정운주,
진선아, 양순임, 박영섭, 정기혁,
경수현, 정해숙, 임태근

1. 제안이유

금연구역 범위가 좁을 경우, 간접흡연으로 인해 아동·청소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경계선 경계면 10미터 구역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에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을 추가(안 제5조제1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, 「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」

나. 협조부서 : 건강정책과

다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23. 2. 9. ~ 2023. 2. 14.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금연지도원”이란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 중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법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“금연지도원”이란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.
제3조(조례의 범위) 이 조례는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내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의 지정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.	제3조(조례의 범위) ----- 법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	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· 2. (생략) <u><신설></u> 3. ~ 6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<u>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 된 구역을 말한다).</u> 4. ~ 7. (현행 제3호부터 제6호 까지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	--